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009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3. 7. .

제안자 : 서경환의원 외 3명

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물놀이장 운영함에 있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(안 제4조)
- 나.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, 성수기 야간 개장시에는 21시까지 연장 운영(안 제6조)
- 다.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이용 제한(안 제8조)
- 라.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가입(안 제9조)

3. 제정조례안 : “따로 붙임”

4. 관련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44조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31조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물놀이장”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, “부대시설”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
2. “물놀이장 이용”이라 함은 물놀이장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이용자”라 함은 여름철 구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안전관리요원”이라 함은 물놀이장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.
5. “어린이”란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6. “청소년”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7. “성인”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
8. “노인”이란 만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이 조례에 따라 관리·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

제4조(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, 수질은 수영장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

제5조(물놀이장 이용)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,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.

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2와 같다

제6조(운영)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다만, 구청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.

1.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

2. 성수기(1개월간) 야간개장은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.

②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
2.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때

3. 노약자·임산부·음주자·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시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.

4. 쾌적한 물놀이장 활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5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보험 가입) 구청장은 물놀이장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9조(손해배상) 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

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관리)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,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(제3조 관련)

시 설 명	소 재 지	주 요 시 설	비고
동천야외물놀이장	남외동 964번지	물놀이기구, 어린이풀, 성인풀	

【별표 2】

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

1. 물놀이장 입수시 충분한 준비운동 후 풀장(물)에 들어갑시다.
2. 물놀이장 이용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.
3.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4. 풀장(물)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수영복·수영모 착용합니다.
5. 물놀이장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뛰어 다니지 맙시다.
6. 노약자, 임산부, 음주자, 신체상의 부적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7. 오물이나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넣어주시십시오.
8. 음식물 반입은 절대금지 합니다.
9.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울산광역시중구청장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7월 19일 · 서경환의원 외 3명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(의안번호 제1009호)
(2013년 7월 25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서경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물놀이장 운영함에 있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(안 제4조)
- 2)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, 성수기 야간 개장 시에는 21시까지 연장 운영(안 제6조)
- 3)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이용을 제한(안 제8조)
- 4)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검토보고자 : 김규협 전문위원)

-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물놀이장의 질서유지, 안전사고 예방, 깨끗한 수질 관리 등 이

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 : 2013년 물놀이장 유료화 계획이 없어 관련 조항 삭제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.

- 안 7호를 삭제한다.

다. 참고사항 :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6조(운영 및 이용료) ① (생략)</u> 1 ~ 2(생략) <u>② 물놀이장 이용료는 일정금액으로 유료화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7조(이용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이용료 면제</u> 가.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 나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<u>2. 이용료 감면</u> 가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유공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), 장애인, 노인 : 50/100 나. 어린이, 청소년,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: 30/100 다. 그 밖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</p>	<p><u>제6조(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u> 1 ~ 2 (현행과 같음) <u>②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